

## 특정내용 구분코드

※ 청구내역에 대한 추가적 기술사항 등을 기재

- 항목의 특정내역 기재형식 중 숫자형은 9로, 문자형은 X로, 소숫점은 V로, 연월일은 CCYYMMDD로, 시간의 시·분은 HHMM으로 표기하며 괄호()는 크기를 나타냄

### 1. 명세서일련번호 단위

구분코드	특정내용	특정내용 기재형식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M001	소명자료 구분	X(1)	전자문서교환방식, Fax 또는 우편 등으로 청구명세서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Y'로 기재												
M002	생년월일 상이건	9(13)	장기요양인정서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상이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명세서 특정내용에 인정서상 생년월일 기재												
M003	주·야간보호급여 월 20일 미만 이용 사유 및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 월 15일(인지지원 등급은 9일) 미만 이용 사유	9(1)/ X(700)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20일 미만 이용하거나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를 월 15일(인지지원등급은 9일)미만 이용하였으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코드를 기재하되 구분코드4, 구분코드5의 경우는 그 사유를 직접 기재 <월 20일 미만 이용 사유코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코드</th> <th style="text-align: center;">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천재지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수급자의 입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수급자의 사망</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주·야간보호 기관의 폐업·지정취소(폐쇄명령)·업무정지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기타</td> </tr> </tbody> </table>	구분코드	내 용	1	천재지변	2	수급자의 입원	3	수급자의 사망	4	주·야간보호 기관의 폐업·지정취소(폐쇄명령)·업무정지 등	5	기타
구분코드	내 용														
1	천재지변														
2	수급자의 입원														
3	수급자의 사망														
4	주·야간보호 기관의 폐업·지정취소(폐쇄명령)·업무정지 등														
5	기타														
M004	단기보호급여 월 15일 초과 이용 사유	9(1)/ X(700)	단기보호급여를 월 15일 초과 이용시는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하되 구분코드 3의 경우는 그 내용을 직접기재 <단기보호 월 15일 초과 이용 사유코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코드</th> <th style="text-align: center;">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가족 등의 외유·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수 없는 경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주거환경의 일시적 변화(이사, 공사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단기보호 급여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td> </tr> </tbody> </table>	구분코드	내 용	1	가족 등의 외유·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수 없는 경우	2	주거환경의 일시적 변화(이사, 공사 등)	3	단기보호 급여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분코드	내 용														
1	가족 등의 외유·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수 없는 경우														
2	주거환경의 일시적 변화(이사, 공사 등)														
3	단기보호 급여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M007	삭제														
M008	삭제														
M009	종사자 계속근무 인정사유	9(1)/ X(700)	종사자가 퇴사, 휴직 등의 경우에도 계속 근무를 인정사유에 해당하는 구분코드를 기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코드</th> <th style="text-align: center;">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종사자가 휴직 및 퇴사 후 6개월 이내 해당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경우</td> </tr> </tbody> </table>	구분코드	내 용	1	종사자가 휴직 및 퇴사 후 6개월 이내 해당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구분코드	내 용														
1	종사자가 휴직 및 퇴사 후 6개월 이내 해당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구분 코드	특정내용	특정내용 기재형식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table border="1"> <tr> <td data-bbox="614 257 735 347">2</td> <td data-bbox="735 257 1359 347">종사자가 직종의 변경없이 월 근무시간 미만 근무한 달이 6개월 이내인 경우</td> </tr> <tr> <td data-bbox="614 347 735 459">3</td> <td data-bbox="735 347 1359 459">(기간산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하는 경우 그 휴직 기간(1년)</td> </tr> <tr> <td data-bbox="614 459 735 548">4</td> <td data-bbox="735 459 1359 548">대표자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으로 기관기호 및 급여유형이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td> </tr> <tr> <td data-bbox="614 548 735 638">5</td> <td data-bbox="735 548 1359 638">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유형이 변경되어 장기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된 경우</td> </tr> <tr> <td data-bbox="614 638 735 772">6</td> <td data-bbox="735 638 1359 772">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중간에 합병 또는 포괄적 양수·양도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td> </tr> <tr> <td data-bbox="614 772 735 907">7</td> <td data-bbox="735 772 1359 907">「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제57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전 해당기관에서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경우</td> </tr> <tr> <td data-bbox="614 907 735 996">8</td> <td data-bbox="735 907 1359 996">「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td> </tr> <tr> <td data-bbox="614 996 735 1086">9</td> <td data-bbox="735 996 1359 1086">「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월 근무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td> </tr> <tr> <td data-bbox="614 1086 735 1176">10</td> <td data-bbox="735 1086 1359 1176">「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명령이 확정된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무하지 못한 경우</td> </tr> <tr> <td data-bbox="614 1176 735 1220">11</td> <td data-bbox="735 1176 1359 1220">(기간연계) 육아휴직 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하는 종사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3년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td> </tr> </table>	2	종사자가 직종의 변경없이 월 근무시간 미만 근무한 달이 6개월 이내인 경우	3	(기간산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하는 경우 그 휴직 기간(1년)	4	대표자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으로 기관기호 및 급여유형이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5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유형이 변경되어 장기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된 경우	6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중간에 합병 또는 포괄적 양수·양도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7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제57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전 해당기관에서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경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월 근무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10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명령이 확정된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무하지 못한 경우	11	(기간연계) 육아휴직 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하는 종사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3년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2	종사자가 직종의 변경없이 월 근무시간 미만 근무한 달이 6개월 이내인 경우																						
3	(기간산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하는 경우 그 휴직 기간(1년)																						
4	대표자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으로 기관기호 및 급여유형이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5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유형이 변경되어 장기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된 경우																						
6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중간에 합병 또는 포괄적 양수·양도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7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제57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전 해당기관에서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경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월 근무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10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명령이 확정된 부당해고 기간 동안 근무하지 못한 경우																						
11	(기간연계) 육아휴직 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하는 종사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3년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M012	단기보호급여 월 9일 초과 이용 사유	9(1)/X(700)	<p>단기보호급여를 월 9일 초과 이용시는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 하되 구분코드 3의 경우는 그 내용을 직접기재 &lt;단기보호 월 9일 초과 이용 사유코드&gt;</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614 1355 735 1400">구분코드</th> <th data-bbox="735 1355 1359 1400">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614 1400 735 1512">1</td> <td data-bbox="735 1400 1359 1512">가족 등의 외유·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수 없는 경우</td> </tr> <tr> <td data-bbox="614 1512 735 1556">2</td> <td data-bbox="735 1512 1359 1556">주거환경의 일시적 변화(이사, 공사 등)</td> </tr> <tr> <td data-bbox="614 1556 735 1624">3</td> <td data-bbox="735 1556 1359 1624">단기보호 급여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td> </tr> </tbody> </table>	구분코드	내 용	1	가족 등의 외유·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수 없는 경우	2	주거환경의 일시적 변화(이사, 공사 등)	3	단기보호 급여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분코드	내 용																						
1	가족 등의 외유·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런 사정으로 인해 수급자를 돌볼 수 없는 경우																						
2	주거환경의 일시적 변화(이사, 공사 등)																						
3	단기보호 급여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M013	삭제																						
M014	주·야간보호 급여 월 15일 미만 이용 사유 및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 월 15일 (인지지원 등급은 9일) 미만 이용 사유	9(1)/X(700)	<p>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 미만 이용하거나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를 월 15일(인지지원등급은 9일) 미만 이용하였으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코드를 기재하되 구분코드4, 구분코드5의 경우는 그 사유를 직접 기재 &lt;월 15일 미만 이용 사유코드&gt;</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614 1892 735 1937">구분코드</th> <th data-bbox="735 1892 1359 1937">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614 1937 735 1982">1</td> <td data-bbox="735 1937 1359 1982">천재지변</td> </tr> <tr> <td data-bbox="614 1982 735 2027">2</td> <td data-bbox="735 1982 1359 2027">수급자의 입원</td> </tr> <tr> <td data-bbox="614 2027 735 2072">3</td> <td data-bbox="735 2027 1359 2072">수급자의 사망</td> </tr> <tr> <td data-bbox="614 2072 735 2116">4</td> <td data-bbox="735 2072 1359 2116">주·야간보호 기관의 폐업, 지정취소(폐쇄명령), 업무정지 등</td> </tr> <tr> <td data-bbox="614 2116 735 2143">5</td> <td data-bbox="735 2116 1359 2143">기타</td> </tr> </tbody> </table>	구분코드	내 용	1	천재지변	2	수급자의 입원	3	수급자의 사망	4	주·야간보호 기관의 폐업, 지정취소(폐쇄명령), 업무정지 등	5	기타								
구분코드	내 용																						
1	천재지변																						
2	수급자의 입원																						
3	수급자의 사망																						
4	주·야간보호 기관의 폐업, 지정취소(폐쇄명령), 업무정지 등																						
5	기타																						

구분 코드	특정내용	특정내용 기재형식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M999	기타내용	X(700)	기타 명세서 참고내용을 기재 - 평문(Free Text) ※ 영문(700자), 한글(350자)

## 2. 제공일 단위

구분 코드	특정내용	특정내용 기재형식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S301	2인의 요양보호사 동시 방문요양 급여 제공사유	ccymmdd/9(1)/X(700)	<p>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되, 구분코드 3의 경우는 그 내용을 직접 기재</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코드</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td> </tr> <tr> <td>2</td> <td>수급자 등의 폭력행위, 방해행위</td> </tr> <tr> <td>3</td> <td>기타</td> </tr> </tbody> </table>	구분코드	내 용	1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2	수급자 등의 폭력행위, 방해행위	3	기타
구분코드	내 용										
1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2	수급자 등의 폭력행위, 방해행위										
3	기타										
S302	주·야간보호 기관 숙박 제공 여부	ccymmdd/99(1)/X(700)	<p>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야간보호 기관에서 연속하여 다음날까지 계속 보호하는 경우 급여제공일과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하되, 구분코드 2의 경우는 그 내용을 직접 기재 &lt;숙박제공여부 구분코드&gt;</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코드</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천재지변</td> </tr> <tr> <td>2</td> <td>기타 부득이한 사유</td> </tr> </tbody> </table>	구분코드	내 용	1	천재지변	2	기타 부득이한 사유		
구분코드	내 용										
1	천재지변										
2	기타 부득이한 사유										
S303	방문목욕급여 주1회 초과 제공사유	ccymmdd/9(1)/X(700)	<p>방문목욕급여를 주1회 초과하여 제공한 경우 초과 급여제공일자에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하되 구분코드 3의 경우는 그 내용을 직접 기재 &lt;방문목욕급여 주1회 초과사유 코드&gt;</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코드</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요실금으로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td> </tr> <tr> <td>2</td> <td>변실금으로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td> </tr> <tr> <td>3</td> <td>기타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td> </tr> </tbody> </table>	구분코드	내 용	1	요실금으로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2	변실금으로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3	기타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구분코드	내 용										
1	요실금으로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2	변실금으로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3	기타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S304	목욕제공장소	ccymmdd/9(1)/X(700)	<p>방문목욕급여 제공방법(고시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정이 아닌 장소에서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하되 구분코드 3의 경우는 목욕장소를 직접 기재 &lt;목욕제공장소 코드&gt;</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코드</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1</td> <td>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td> </tr> <tr> <td>2</td> <td>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td> </tr> <tr> <td>3</td> <td>기타</td> </tr> </tbody> </table>	구분코드	내 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	3	기타
구분코드	내 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목욕실이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대중목욕탕										
3	기타										
S305	이동서비스 제공내용		<p>고시 제34조 주야간보호급여 이동서비스 비용 산정 방법에 따라 이동서비스 제공내용을 기재하며 차량번호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차량번호를 기재</p>								

구분코드	특정내용	특정내용 기재형식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table border="1"> <tr> <td data-bbox="627 235 1208 275">이동서비스 제공내용</td> <td data-bbox="1208 235 1359 275">차량번호</td> </tr> <tr> <td data-bbox="627 275 1208 342">수급자의 가정에서 주·야간보호 기관까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td> <td data-bbox="1208 275 1359 479" rowspan="3"></td> </tr> <tr> <td data-bbox="627 342 1208 409">주·야간보호 기관에서 수급자의 가정까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td> </tr> <tr> <td data-bbox="627 409 1208 479">수급자의 가정에서 주·야간보호 기관까지 왕복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td> </tr> </table>	이동서비스 제공내용	차량번호	수급자의 가정에서 주·야간보호 기관까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주·야간보호 기관에서 수급자의 가정까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의 가정에서 주·야간보호 기관까지 왕복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이동서비스 제공내용	차량번호																	
수급자의 가정에서 주·야간보호 기관까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주·야간보호 기관에서 수급자의 가정까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의 가정에서 주·야간보호 기관까지 왕복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S306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120분 미만 이용사유	ccymmdd/ 9(1)/X(700)	<p>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120분 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급여제공일자에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하되 구분코드5의 경우는 직접 기재</p> <p style="text-align: center;">&lt;120분 미만 이용사유 코드&gt;</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627 656 754 696">구분코드</th> <th data-bbox="754 656 1359 696">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627 696 754 739">1</td> <td data-bbox="754 696 1359 739">천재지변</td> </tr> <tr> <td data-bbox="627 739 754 781">2</td> <td data-bbox="754 739 1359 781">수급자 입원</td> </tr> <tr> <td data-bbox="627 781 754 824">3</td> <td data-bbox="754 781 1359 824">사망</td> </tr> <tr> <td data-bbox="627 824 754 891">4</td> <td data-bbox="754 824 1359 891">제공자-수급자 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td> </tr> <tr> <td data-bbox="627 891 754 934">5</td> <td data-bbox="754 891 1359 934">기타</td> </tr> <tr> <td data-bbox="627 934 754 965">6</td> <td data-bbox="754 934 1359 965">가족인 요양보호사</td> </tr> </tbody> </table>		구분코드	내 용	1	천재지변	2	수급자 입원	3	사망	4	제공자-수급자 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5	기타	6	가족인 요양보호사
구분코드	내 용																	
1	천재지변																	
2	수급자 입원																	
3	사망																	
4	제공자-수급자 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5	기타																	
6	가족인 요양보호사																	
S307	5등급 수급자의 주·야간보호급여 8시간 미만 이용사유	ccymmdd/ 9(1)/X(700)	<p>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 이용한 경우 급여제공일자에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하되 4의 경우는 직접 기재</p> <p style="text-align: center;">&lt; 주·야간보호급여 8시간 미만 이용사유 코드&gt;</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627 1126 754 1167">구분코드</th> <th data-bbox="754 1126 1359 1167">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627 1167 754 1209">1</td> <td data-bbox="754 1167 1359 1209">천재지변</td> </tr> <tr> <td data-bbox="627 1209 754 1252">2</td> <td data-bbox="754 1209 1359 1252">수급자 입원</td> </tr> <tr> <td data-bbox="627 1252 754 1294">3</td> <td data-bbox="754 1252 1359 1294">수급자 사망</td> </tr> <tr> <td data-bbox="627 1294 754 1337">4</td> <td data-bbox="754 1294 1359 1337">기타</td> </tr> </tbody> </table>		구분코드	내 용	1	천재지변	2	수급자 입원	3	수급자 사망	4	기타				
구분코드	내 용																	
1	천재지변																	
2	수급자 입원																	
3	수급자 사망																	
4	기타																	
S308	5등급 수급자의 일반 방문요양급여 이용 사유 및 프로그램관리자 월중퇴사 코드를 기재	ccymmdd/ 9(1)/X(700)	<p>5등급 수급자의 일반 방문요양급여 이용사유 및 프로그램관리자 월중퇴사 코드를 기재</p> <p style="text-align: center;">&lt; 5등급 수급자의 일반 방문요양급여 이용사유&gt;</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627 1514 754 1554">구분코드</th> <th data-bbox="754 1514 1359 1554">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627 1554 754 1597">1</td> <td data-bbox="754 1554 1359 1597">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td> </tr> <tr> <td data-bbox="627 1597 754 1664">2</td> <td data-bbox="754 1597 1359 1664">5등급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td> </tr> <tr> <td data-bbox="627 1664 754 1749">3</td> <td data-bbox="754 1664 1359 1749">프로그램관리자가 월중에 퇴사했으나 계속하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한 경우</td> </tr> </tbody> </table>		구분코드	내 용	1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	2	5등급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	3	프로그램관리자가 월중에 퇴사했으나 계속하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한 경우						
구분코드	내 용																	
1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																	
2	5등급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																	
3	프로그램관리자가 월중에 퇴사했으나 계속하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한 경우																	
S309	장기요양가족 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간호(조무)사 방문여부	ccymmdd/ 9(1)/X(700)	<p>종일 방문요양 급여제공 중에 방문한 간호(조무)사의 성명과 방문일시를 기재</p>															
S310	장시간 연속 방문요양급여 제공 사유	ccymmdd/ 9(1)/X(700)	<p>1, 2등급 월 8일 270분 이상 연속, 3, 4등급 월 4일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p>															
S311	주·야간보호	ccymmdd/	<p>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p>															

구분코드	특정내용	특정내용 기재형식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미제공 사유	9(1)/X(700)	<p>제공하지 못하였으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코드를 기재하되 구분코드6의 경우는 그 사유를 직접 기재</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코드</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1</td> <td>프로그램관리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21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td> </tr> <tr> <td>2</td> <td>천재지변</td> </tr> <tr> <td>3</td> <td>수급자의 갑작스러운 병원방문</td> </tr> <tr> <td>4</td> <td>프로그램 제공자가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연차 등)</td> </tr> <tr> <td>5</td> <td>프로그램관리 또는 치매전문요양보호사의 근무 일정상 휴무일(연차 제외)</td> </tr> <tr> <td>6</td> <td>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직접입력)</td> </tr> </tbody> </table>	구분코드	내 용	1	프로그램관리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21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천재지변	3	수급자의 갑작스러운 병원방문	4	프로그램 제공자가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연차 등)	5	프로그램관리 또는 치매전문요양보호사의 근무 일정상 휴무일(연차 제외)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직접입력)
구분코드	내 용																
1	프로그램관리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21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천재지변																
3	수급자의 갑작스러운 병원방문																
4	프로그램 제공자가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연차 등)																
5	프로그램관리 또는 치매전문요양보호사의 근무 일정상 휴무일(연차 제외)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직접입력)																
S312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	ccyymmdd/9(1)/X(700)	주·야간보호 기관에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계획한 프로그램 관리자를 기재														
S313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제공자	ccyymmdd/9(1)/X(700)	주·야간보호 기관에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프로그램제공자를 기재														
S314	3인 이상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자	ccyymmdd/9(1)/X(700)	방문목욕 제공기관에서 3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을 제공한 경우 주(主) 요양보호사가 아닌 요양보호사의 성명, 급여제공시간을 기재														
S315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	ccyymmdd/9(1)/X(700)	방문요양기관에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계획한 프로그램 관리자와 방문일시를 기재														
S317	방문요양 1일 다횃수 방문요양급여 제공사유	ccyymmdd/9(1)/X(700)	1일 다횃수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														
S318	주·야간보호 1회 13시간 초과 이용사유	ccyymmdd/9(1)/X(700)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														
S319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인지자극활동 60분 미만 제공사유	ccyymmdd/9(1)/X(700)	<p>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인지자극활동 60분 미만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일자에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하되 구분코드5의 경우는 직접 기재</p> <p style="text-align: center;">&lt; 인지자극활동 60분 미만 이용사유 &gt;</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코드</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천재지변</td> </tr> <tr> <td>2</td> <td>수급자 입원</td> </tr> <tr> <td>3</td> <td>사망</td> </tr> <tr> <td>4</td> <td>제공자-수급자 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td> </tr> <tr> <td>5</td> <td>기타</td> </tr> </tbody> </table>	구분코드	내 용	1	천재지변	2	수급자 입원	3	사망	4	제공자-수급자 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5	기타		
구분코드	내 용																
1	천재지변																
2	수급자 입원																
3	사망																
4	제공자-수급자 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5	기타																
S321	방문목욕급여 몸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 제공사유	ccyymmdd/9(1)/X(700)	<p>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면서 몸 씻기 과정만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경우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코드</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수급자의 수치심</td> </tr> </tbody> </table>	구분코드	내 용	1	수급자의 수치심										
구분코드	내 용																
1	수급자의 수치심																

구분코드	특정내용	특정내용 기재형식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S322	2인의 간호(조무)사 동시 방문간호급여 제공사유	ccyymmdd/9(1)/X(700)	간호(조무)사 2인이 동시에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되, 구분코드3의 경우는 그 내용을 직접 기재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분코드</th> <th>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td> </tr> <tr> <td>2</td> <td>수급자 등의 폭력행위, 방해행위</td> </tr> <tr> <td>3</td> <td>기타</td> </tr> </tbody> </table>	구분코드	내 용	1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2	수급자 등의 폭력행위, 방해행위	3	기타
구분코드	내 용										
1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2	수급자 등의 폭력행위, 방해행위										
3	기타										
S325	종사자 휴게 시간 여부	ccyymmdd/9(1)/X(700)	240분 이상 연속근무 4시간 마다 휴게시간 30분이 부여되며 급여를 제공한 종사자가 휴게시간을 가진 경우 종사자의 성명과 총 휴게시간을 기재(종일 방문요양 포함)								
S999	기타 내용	ccyymmdd/X(700)	서비스 제공일별 기타 참고내용을 기재 - 평문(Free Text) ※ 영문(700자), 한글(350자)								